

#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제정안

의안 번호	1924
----------	------

제출년월일 : 2009. 11.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 제정이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한 4개의 조례, 「안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안산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지역적용에 관한 조례」, 「안산시 교통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폐합 하여 대체 입법함으로써 집행의 효율성 도모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되어 조례의 일부 조문이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음에 따라 재정비 함

## □ 주요내용

- 가. 교통정비기본계획의 위상을 정립하고 의견청취 및 기초조사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4조~제5조)
- 나. 교통영향평가 제도가 폐지되고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심의 위원회 기능 및 수당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7조~11조)
- 다.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대상을 규정함.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자에 대한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여부를 관할부서에서 지도감독하여 미이행시 감면액을 조정하거나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안 제12조 ~ 제22조)
- 라. 도시교통정비계획의 시행과 도시교통 개선의 필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함.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출용도는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등으로 제한함. 세입은 기존의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처리비용 등을 반영함.(안 제23조~ 제28조)
- 마. 「안산시 교통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산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지역적용에 관한 조례」, 「안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 함(안 부칙 제 2조)

제정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6조, 제19조, 제21조, 제33조, 제37조, 제44조, 제49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3조의5, 제13조의6, 제16조, 제17조, 제37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6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161조
-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
-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제19조, 제21조의 2, 제24조의2, 30조, 제32조
- 「주차장법 시행령」 제15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 :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

- 입법예고 : 2009. 10. 16. ~ 2009. 11. 5.(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붙임

-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조례 제정 계획

#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제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이 조례는 안산시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형교통체계”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전자, 정보, 통신 및 제어 등의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여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도시교통정비계획”이란 도시교통의 방향 및 미래상을 포함하는 20년 단위의 장기계획과 이에 따라 10년 단위마다 구체적인 추진내용 및 투자계획을 포함하는 중기계획, 그리고 해당연도에 시행할 구체적 목표 물량과 소요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등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하는 3년 단위 시행계획을 말한다.
3. “사업”이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의 2제3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을 말한다.
4. “변경심의”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제4항에 따라 개선 필요사항 등을 통보받은 대상사업에 대하여 법 제21조 제1항·제3항 및 영 제13조의6제1항·제2항에 따른 사유로 이미 수립된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5. “보고서”란 사업자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한 자료를 말한다.
6. “부담금”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7. “교통량”이란 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차의 통행량을 말한다.

8.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써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차량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9. “감축프로그램”이란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 가. “승용차10부제”란 일력의 끝 숫자가 승용차번호 끝 숫자와 일치 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영 제16조제4항에서 규정한 연결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 나. “승용차5부제”란 일력의 끝 숫자가 승용차번호 끝 숫자 또는 승용차번호 끝 숫자에 5를 더한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승용차요일제”란 월·화·수·목·금요일 중 운전자가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해당요일과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 라. “승용차2부제”란 일력의 끝 숫자가 승용차번호 끝 숫자의 홀짝수와 일치하지 않는 날에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 마. “주차장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안산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한 주차요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바. “승용차함께타기”란 출·퇴근 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2인 이상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 사. “시차출근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 아. “통근버스운영”이란 기업체가 소유 또는 임대한 승합자동차를 종사자의 출·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자. “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이란 종사자와 이용자의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100분의 80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월4회 이상 탑승 가능한 비용의 교통카드 충전 또는 지하철승차권 등을 매월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차.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란 서로 다른 시설물이 연합하여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 “통근버스공동운영” 또는 “승용차함께타기”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카. “자전거이용활성화”란 종사자와 이용자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

거 보관소 등을 설치·제공하여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10. “교통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철도·공항·항만·터미널 등의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교통수단의 원활한 운영을 보조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 제2장 도시교통정비계획

**제4조(도시교통정비계획의 위상)** 도시교통정비계획은 시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5조(의견 청취)** 시장은 법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에는 각종 위원회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기초 조사)** 시장은 영 제10조제4항 각 호의 조사·분석을 위해 지능형교통체계와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3장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제7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은 안산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19조 및 영 제13조의5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변경심의를 포함한다)
2.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 내용 중 위원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의 자문
3. 영 제13조의5제12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의 의결
4. 시장이 입안한 제5조의 도시교통정비계획안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도시교통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9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13조의5제1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위원회 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3조의5에 따라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하다.

②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시행되는 사전검토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토 경비(심사수당)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보고서의 제출 등)** 사업자는 제8조제1호의 심의(변경심의를 포함한다)를 완료 후 시장에게 디스크 등의 전자매체에 수록한 보고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장 교통수요관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

**제12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에 따른 공청회 개최 방법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7일 전까지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시정뉴스 등을 통하여 주요 내용을 포함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시행하고자 하는 교통수요관리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통수요관리 시행방안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여부 및 그 사유를 제1항 후단의 수단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안의 시설(부과대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 시설), 송배전용 변전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배수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정수 처리시설 등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등)**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 당 500원
2. 제1호 이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 당 350원

**제15조(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6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한다.

**제1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시설물의 소유자가 감축프로그램 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100분의 10 이상 감축할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9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한다.

② 시설물의 소유자가 경감 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3조제9호의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영 제24조제6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감축프로그램 이행 기준 및 경감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를 이행한 경우는 별표 3의 경감 기준을 적용한다.

④ 영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한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교통량경감비율은 감축프로그램 각각의 부담금경감비율의 합계로 본다. 다만 제3조제9호가목 부터 다목 까지 규정한 승용차 2·5·10부제 및 요일제의 경감 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⑤ 경감비율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이 경우 월 단위 또는 일할 계산 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제17조(감축이행계획서 등)** ① 감축프로그램의 이행으로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시설물 소유자는 매 분기 말 기준으로 다음 분기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이하 "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행실태보고서에는 실제로 실행한 감축프로그램 실적기록과 함께 실적을 입증할 서류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부담금 경감 의무사항)** 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소유자는 이행계획이 변경될 경우, 변경계획서를 즉시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소유자는 시장의 이행실태 점검이 있을 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만약 확인을 거부할 시 미 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

③ 제17조제3항의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9조(이행계획서 및 실태보고서 작성기준)** 이행계획서 상 감축프로그램 작성 기간은 해당년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시설물 소유자는 6개월 이상 지속하여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부담금 경감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20조(감축프로그램 미 이행 시 조치사항)**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표 1에 따라 감면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3회 이상 미 이행 사항이 확인된 해당 감축프로그램은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하고, 시장의 이행실태 점검을 거부하거나, 감축프로그램 2가지 이상이 부담금경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부담금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1조(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축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상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가 대상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게 하는 경우
3. 공공기관에 일반시민의 승용차가 진·출입하는 경우
4.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의 통근버스 운영 및 시차출근제를 운영하는 경우
5. 제3조제9호사목에 따른 통근버스를 오전 6시 이전 출근자 및 정오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경우

6. 매월 31일에는 승용차 2·5·10부제 및 요일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제22조(부담금 경감 신청 등)** ①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 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 경감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경감 신청내역을 확인·조사한 후 부담금 경감 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장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제23조(특별회계의 설치)** 교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4조(세입)** 이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36조에 따라 징수한 교통유발부담금
2.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용제한명령 위반 과태료
3.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용차로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4.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5.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 납부금
6.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7.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 및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입금
8.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9.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10.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11.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처리비용
1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정부 보조금

15. 기타 수입금

16. 그 밖의 도시교통 및 주차 관련한 수입

**제25조(세출)** ①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1.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노상·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을 포함)
2.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3.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4. 법 제33조 및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관련 사업
5.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6. 일반 주거지역 또는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내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건축물 또는 대문 및 담장 등을 철거·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이웃간의 경계 담을 헐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

② 제2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수입금과 기타 주차장 관련 지정 수입은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26조(잉여금의 처리)** 이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2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도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28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 제6장 보 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를 폐지한다.

1. 「안산시교통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안산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지역적용에 관한 조례」
3. 「안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4. 「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

**제3조(위원회폐지)** 「안산시교통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산시교통개혁위원회」 및 「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는 폐지하고 각 위원회의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제4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재정지원심사)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제2조의 보조금액을 결정한다.

소관 실·과		교통기획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교통기획과장 이 장 원
	담당·팀장 직위·성명	ITS 추진담당 정 명 현
	담당자 성명·전화	정 명 욱 (행정 2975)

[별표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검토경비지급 기준  
(제10조제2항 관련)

구 분	단 위	단 가
검토경비 (심사수당)	전 당	- 전 당 : 40,000원 ※ 지급상한액 : 200,000원

[별표2]

##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제16조3항 관련)

프로그램	이행기준	경 감 비 율	
		정상 이행시	
		1회	미 이행시 2회
승용차 10부제	○일력의 끝 숫자가 승용차번호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기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 금지	○정상이행시 경감비율의 2분의 1 적용	○정상이행시 경감비율의 4분의 1 적용
승용차 5부제	○일력의 끝 숫자가 승용차번호 끝 숫자 또는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기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 금지	○정상 이행시 경감비율의 2분의 1 적용	○정상 이행시 경감비율의 4분의 1 적용
승용차요일제	○요일제 전자 스티커를 부착하고 해당요일에 승용차의 진·출입 금지	○정상 이행시 경감비율의 2분의 1 적용	○정상 이행시 경감비율의 4분의 1 적용
승용차 2부제	○일력의 끝 숫자가 승용차번호 끝 숫자의 짝수와 일치하지 않는 날에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 금지 (단 31일은 적용하지 않음)	○정상 이행시 경감비율의 2분의 1 적용	○정상 이행시 경감비율의 4분의 1 적용
주차장 유료화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요금의 100분의 70이상 징수 ※다만, 기업체·단체 등의 소유차량 제외	○정상 이행시 경감비율의 2분의 1 적용	○정상 이행시 경감비율의 4분의 1 적용
통근버스 영	○기업체 소유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제공	○정상 이행시 경감비율의 2분의 1 적용	○정상 이행시 경감비율의 4분의 1 적용

프로그램	이행기준	경감비율	
		경감비율	미이행시
			1회
시차출근제	○09:00를 기준으로 1시간이상 차이나거나 총사자의 50퍼센트 이상 출근시간 조정. 다만, 오전 06:00이전 또는 정오 이후 출 근자 제외	○정상이행시 경감비율의 2분의 1 적용	○정상이행시 경감 비율의 4분의 1 적용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지급	○총사자의 80퍼센트 이상에게 월40회 이상 상당의 탑승 가능한 비용을 매월 교통카드 또는 승차권으로 제공(현금지 급 제외)	○ 경감대상 제외	
승용차 함께타기	○출퇴근시 총사자2인 이상 승용차에 승 차하여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에 로 진출입하는 것 (20대 이상 참여자 등 관 때 적용, 참여차량 표시 참여자 등 관 연계확비치, 주차장 구분운영)	○정상이행시 경감비율 의 2분의 1 적용	○정상이행시 경감 비율의 4분의 1 적용
총사자에 대한 승용차 이용제한	○출퇴근시 등에 소속 총사자에 대한 자가용 이용을 강제 제한 (방침수립, 교육 및 주차장 출입제한)	○정상이행시 경감비율 의 2분의 1 적용	○정상이행시 경감 비율의 4분의 1 적용
자진거이용 활성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고 소속 총사자 최소 5%이상 참여(단, 총사자 100인이 하 시설의 경우 최소 5인이상 참여)	○정상이행시 경감비율 의 2분의 1 적용	○정상이행시 경감 비율의 4분의 1 적용
	○출퇴근시 총사자2인 이상 승용차에 승 차하여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에 로 진출입하는 것 (20대 이상 참여자 등 관 때 적용, 참여차량 표시 참여자 등 관 연계확비치, 주차장 구분운영)	○정상이행시 경감비율 의 2분의 1 적용	○정상이행시 경감 비율의 4분의 1 적용
	○자가용이용대수 ÷ 총사자수의 비율 · 총사자 2,000명이상 기업체 및 기관 -90퍼센트 이상 제한시 : 100분의 20 -80퍼센트 이상 제한시 : 100분의 10 · 총사자 500명이상 2,000명 미만 기업기업체 및 기관 -90퍼센트이상 제한시 : 100분의 10 -80퍼센트이상 제한시 : 100분의 5	○정상이행시 경감비율 의 2분의 1 적용	○정상이행시 경감 비율의 4분의 1 적용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정상이행시 경감비율 의 2분의 1 적용	○정상이행시 경감 비율의 4분의 1 적용
	○승용차함께타기 차량이 -20대초과시마다 100분의 1씩 추가 부담금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적용	○정상이행시 경감비율 의 2분의 1 적용	○정상이행시 경감 비율의 4분의 1 적용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정상이행시 경감비율 의 2분의 1 적용	○정상이행시 경감 비율의 4분의 1 적용
	○월평균 300건 이상 : 100분의 1 ○월평균 600건 이상 : 100분의 2 ○월평균 1200건 이상 : 100분의 3 ○월평균 1800건이상 : 100분의 4 ○월평균 2400건이상 : 100분의 5	○정상이행시 경감비율 의 2분의 1 적용	○정상이행시 경감 비율의 4분의 1 적용

[별표3]

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 경감기준  
(제16조3항 관련)

승용차함께 타기

교통수단을 제공한 해당 기업체(기관)	참여한 기업체(기관)	
	1회	미 이행시 2회
<p>○해당 시설물의 기업체(기관) 및 종사자의 승용차를 이용하여</p> <p>-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승용차함께타기 이행시 : 100분의 1</p> <p>-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승용차함께타기 이행시 : 100분의 2</p> <p>-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승용차함께타기 이행시 : 100분의 3</p> <p>-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50인 이상 60인 미만 승용차함께타기 이행시 : 100분의 4</p> <p>-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60인 이상 승용차함께타기 이행시 : 100분의 5</p>	<p>○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p> <p>-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승용차를 이용하여 월평균 30이이상 40인미만인 승요차함께타기 이행시 : 100분의 1</p> <p>-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승용차를 이용하여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승용차함께타기 이행시 : 100분의 2</p> <p>-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승용차를 이용하여 월평균 50인이상 60인미만 승용차함께타기 이행시 :100분의 3</p> <p>-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승용차를 이용하여 월평균 60인 이상 70인 미만 승용차함께타기 이행시 : 100분의 4</p> <p>-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승용차를 이용하여 월평균 70인 이상 승용차함께타기 이행시 : 100분의 5</p>	<p>○정상이행시 경감 비율의 4분의 1 적용</p>

□ 통근버스 공동운영

통근버스 제공한 기업체(기관)	미 이행 시	
	1회	2회
<p>통근버스를 이용한 기업체(기관)</p> <p>○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10인 이상 20인 미만 이용시 : 100분의 1</li> <li>-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이용시 : 100분의 2</li> <li>-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이용시 : 100분의 3</li> <li>-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이용시 : 100분의 4</li> <li>-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인 이상 이용시 : 100분의 5</li> </ul>	<p>통근버스를 이용한 기업체(기관)</p> <p>○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기관)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이용시 : 100분의 1</li> <li>-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기관)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 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이용시 : 100분의 2</li> <li>-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기관)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이용시 : 100분의 3</li> <li>-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기관)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50인 이상 60인 미만 이용시 : 100분의 4</li> <li>-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기관)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60인 이상 이용시 : 100분의 5</li> </ul>	<p>○정상 이행시 경감</p> <p>○정상 이행시 경감 비율의 4분의 1 적용</p>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시설개요	명칭	면적(m <sup>2</sup> )	
	주소	대표자	
주차장규모	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기계식주차장 대	입주업체주	
		일상근무자 (종사자)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주차장유료화	○ 주차요금 : ○ 징수방법 :	
	승용차10부제	○ 시행방법 :	
	승용차 5부제	○ 시행방법 :	
	요일제	○ 시행방법 :	
	승용차 2부제	○ 시행방법 :	
	승용차함께타기	○ 통근용승용차 : 대, ○시행차량: 대 ○ 통근관리인선임: 명	
	시차 출근제	○ 출근시간 :	
	통근버스운영	○상근근무직원수: 명 ○운행대수: 대 ○좌석수: 개 ○시행방법: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	○ 1인당 월 만원(월간 : )	
	소속 종사자에 대한 자가용 승용차 이용제한	○시행방법 :	
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	○승용차함께타기 시행방법 : ○통근버스공동운영시행방법 :		
자전거 이용활성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 후 종사자 참여 시행방법: ○자전거 이용 고객 인센티브 적용 시행방법 :		
<p>「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제17조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p> <p>안산시장 귀하</p> <p>(추후 교통량감축실태보고서 및 실적 증빙 서류 제출하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감면대상에서 제외됨.)</p>			





[별지 제4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경감비율결정통보서					
시설개요	명칭			면적(m <sup>2</sup> )	
	주소			대표자	
	주차장규모	총대	평면주차장 지하주차장 기계식주차장	대대대	입주업체주 일상근무자 (종사자)
경감결정사항	구분		신청사항		결정사항
	경감비율		%		%
	승용차 10부제		%		%
	승용차 5부제		%		%
	요일제		%		%
	승용차 2부제		%		%
	승용차 함께타기		%		%
	시차출근제		%		%
	통근버스운영		%		%
	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		%		%
	소속종사자에 대한 자가용승용차이용제한		%		%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		%		%
	자전거이용활성화		%		%
<p>「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제 22조 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안산시장(직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 하</p>					

#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924
----------	------

제안년월일 : 2009. 12. 24.

제안자 : 도시건설위원장

## 1. 수정이유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교통유발 부담금의 경감하는 감축프로그램의 이행여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2. 주요 골자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심의, 버스노선 조정·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의 자문, 택시공급지침·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신설함 (안 제8조)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감축프로그램은 부담금 경감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행여부 확인을 거부하거나 2개이상의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시설물을 부담금 경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이행여부 확인의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20조)

#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제2호 중 “도시교통의 방향 및 미래상을 포함하는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5조 중 “각종 위원회 또는 전문가”를 “제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 제4호 중 “시장이 입안한 제5조의 도시교통정비계획안”을 “도시교통정비계획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심의
6. 버스노선 조정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자문
7. 택시공급지침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자문

제10조 제1항 중 “그러지 하니 하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1조 중 “사업자”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13조 중 “따른”을 “따라”로 한다.

제16조 제4항 중 “제3조제9호가목 부터 다목 까지”를 “제3조제9호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감축프로그램 미이행 시 조치사항)** ①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감축프로그램은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의 이행실태 점검을 거부하거나, 감축프로그램 2가지 이상이 제1항에 따라 부담금경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부담금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감축프로그램의 이행여부의 기준 및 확인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제4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재정지원심사)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조의 보조금액을 결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제16조3항 관련)

프로그램	이행기준	경 감 비 율
승용차 10부제	○일력의 끝 숫자가 승용차번호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 금지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승용차 5부제	○일력의 끝 숫자가 승용차번호 끝 숫자 또는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 금지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다만, 10부제 경감비율을 합산하지 않음
승용차요일제	○요일제 전자 스티커를 부착하고 해당요일에 승용차의 진·출입 금지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다만, 5,10부제 경감비율을 합산하지 않음
승용차 2부제	○일력의 끝 숫자가 승용차번호 끝 숫자의 홀짝수와 일치하지 않는 날에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 금지 (단 31일은 적용하지 않음)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30 *다만, 5,10부제 및 요일제 경감비율을 합산하지 않음
주차장 유료화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요금의100분의 70이상 징수 *다만, 기업체·단체 등의 소유차량 제외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30
통근버스 운 영	○기업체 소유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제공	○출퇴근 운영시 : ((총좌석수÷총종사자수)÷2)×100의 비율 ○출근 또는 퇴근만 운영시 : ((총좌석수 : 총종사자수) : 4)×100의 비율(경감율 최대 100분의 30) ○단,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적용
시차출근제	○09:00를 기준으로 1시간이상 차이 나게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 출근시간 조정. 다만, 오전 06:00이전 또는 정오 이후 출근자 제외	○· 1시간 차이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지급	○종사자의 80퍼센트 이상에게 월40회 이상 상당의 탑승 가능한 비용을 매월 교통카드 또는 승차권으로 제공(현금지급 제외)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승용차 함께타기	○출퇴근시 종사자2인 이상 승용차에 승차하여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 (20대 이상 참여할 때 적용, 참여차량 표시 참여자 등 관련계획비치, 주차장 구분운영)	○승용차함께타기 차량이 -20대초과시마다 100분의 1씩 추가 부담금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적용
종사자에 대한 승용차 이용제한	○출퇴근시 등에 소속 종사자에 대한 자가용 이용을 강제 제한 (방침수립, 교육 및 주차장 출입제한)	○자가용이용대수 : 종사자수의 비율 · 종사자 2,000명이상 기업체 및 기관 -90퍼센트 이상 제한시 : 100분의 20 -80퍼센트 이상 제한시 : 100분의 10 · 종사자 500명이상 2,000명 미만 기업기업체 및 기관 -90퍼센트이상 제한시 : 100분의 10 -80퍼센트이상 제한시 : 100분의 5
자전거이용 활성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고 소속 종사자 최소 5%이상 참여(단, 종사자 100인이하 시설의 경우 최소 5인이상 참여) ○자전거 이용 고객에게 별도 포인트 적립등의 인센티브 적용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 월평균 300건 이상 : 100분의 1 ○ 월평균 600건 이상 : 100분의 2 ○ 월평균 1200건 이상 : 100분의 3 ○ 월평균 1800건이상 : 100분의 4 ○ 월평균 2400건이상 : 100분의 5

[별표3]

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 경감기준  
(제16조3항 관련)

□ 승용차함께 타기

교통수단을 제공한 해당 기업체(기관)	참여한 기업체(기관)
○ 해당 시설물의 기업체(기관) 및 종사자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승용차함께타기 이행시 : 100분의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승용차함께타기 이행시 : 100분의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승용차함께타기 이행시 : 100분의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50인 이상 60인 미만 승용차함께타기 이행시 : 100분의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60인 이상 승용차함께타기 이행시 : 100분의 5	○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승용차를 이용하여 월평균 30인 이상 40인미만인 승용차함께타기 이행시 : 100분의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승용차를 이용하여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승용차함께타기 이행시 : 100분의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승용차를 이용하여 월평균 50인 이상 60인미만 승용차함께타기 이행시 : 100분의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승용차를 이용하여 월평균 60인 이상 70인 미만 승용차함께타기 이행시 : 100분의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승용차를 이용하여 월평균 70인 이상 승용차함께타기 이행시 : 100분의 5

□ 통근버스 공동운영

통근버스 제공한 기업체(기관)	통근버스를 이용한 기업체(기관)
○ 해당 기업체(기관) 운영하는 통근버스에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10인 이상 20인 미만 이용시 : 100분의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이용시 : 100분의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이용시 : 100분의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이용시 : 100분의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인 이상 이용시 : 100분의 5	○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기관)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이용시: 100분의 1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기관)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 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이용시: 100분의 2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기관)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이용시 : 100분의 3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기관)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50인 이상 60인 미만 이용시 : 100분의 4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기관)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60인 이상 이용시 : 100분의 5

# 조 문 대 비 표

## 원 안

## 수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도시교통정비계획”이란 도시교통의 방향 및 미래상을 포함하는 20년 단위의 장기계획과 이에 따라 10년 단위마다 구체적인 추진내용 및 투자계획을 포함하는 중기계획, 그리고 해당연도에 시행할 구체적 목표 물량과 소요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등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하는 3년 단위 시행계획을 말한다.
3. (생략)
4. “변경심의”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선 필요사항 등을 통보 받은 대상사업에 대하여 법 제21조 제1항·제3항 및 영 제13조의6제1항·제2항에 따른 사유로 이미 수립된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5. ~ 10. (생략)

**제5조(의견 청취)** 시장은 법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에는 각종 위원회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정의)** -----

1. (원안과 같음)
2.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
3. (원안과 같음)
4. ----- 법 -----
5. ~ 10. (원안과 같음)

**제5조(의견 청취)** -----

제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



원 안	수 정 안
에게 디스크 등의 전자매체에 수록한 보고서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
<b>제13조(부담금의 면제)</b>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안의 시설(부과대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 시설), 송배전용변전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배수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정수처리시설 등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b>제13조(부담금의 면제)</b> ----- ----- 따라 ----- ----- ----- ----- -----
<b>제1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 ③</b> (생략) ④ 영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한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교통량경감비율은 감축프로그램 각각의 부담금경감비율의 합계로 본다. 다만 제3조제9호가목 부터 다목까지 규정한 승용차 2·5·10부제 및 요일제의 경감 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⑤ (생략)	<b>제1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 ③</b> (원안과 같음) ④ ----- ----- -----제3조제9호가목부터 라 목까지 ----- ----- ⑤ (원안과 같음)
<b>제20조(감축프로그램 미 이행 시 조치사항)</b>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표 1에 따라 감면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3회 이상 미 이행 사항이 확인된 해당 감축프로그램은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하고, 시장의 이행실태 점검을 거부하거나, 감축프로그램 2가지 이상이 부담금경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부담금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b>제20조(감축프로그램 미이행 시 조치사항)</b> ①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감축프로그램은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의 이행실태 점검을 거부하거나, 감축프로그램 2가지 이상이 제1항에 따라 부담금경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부담금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원 안

부 칙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제4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재정지원심사)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제2조의 보조금액을 결정한다.

수 정 안

부 칙

③ 감축프로그램의 이행여부의 기준 및 확인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제4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재정지원심사)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조의 보조금액을 결정한다.